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21
----------	-------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안도결 · 김동아 · 정진욱
박민규 · 박균택 · 이용선
조계원 · 정준호 · 양부남
윤준병 · 김우영 · 이언주
정태호 · 서삼석 · 최혁진
김원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u>발전사업</u> <u>자 · 송전사업자</u> , 「방사성폐기 <u>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u> <u>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u> 및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 ----- ----- <u>발</u> <u>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재생에</u> <u>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u> ----- ----- ----- ----- -----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 다)가 시행한다.	